

1. 개정이유

시화지구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환경개선을 위해 구성·운영하고 있는 협의회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위원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등 그동안 운영 상의 미흡·미비한 규정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원의 연임 횟수를 신설함(안 제16조)

나. 전문가 위원의 추천을 시민·환경단체뿐만 아니라 협의회 참여기관도 가능하도록 하고, 별도의 추천위원회에서 평가 추천하도록 개선(안 제4조 및 제11조)

다.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경우를 운영세칙에서 정하도록 명시(안 제12조)

라. 위원의 법령 규정 준수 및 기피·제척 준수 의무 등을 규정에 명시(안 제17조)

마. 정부측 위원장을 국토정책관으로 조정하고, 영상회의를 도입하며, 정부측 위원은 대리참석이 가능토록 개선(안 제4조 및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토도시실장”을 “국토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나목 중 “시민·환경단체에서 추천하는”을 “도시계획 및 환경분야”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공모 등 협의회에서 정하는 선정절차를 통해 공동위원장이”를 “공모 및 평가를 통해 별도의 추천위원회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민간위원 공모, 평가 및 추천 절차와 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에서 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공동위원장의 합의에 따라”를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위원장의 합의에 의해”로 한다.

제1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회의는 협의회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정부측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 직위에 있는 사람

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중 “연임”을 “한 차례 연임”으로 한다.

제17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협의회 위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해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당해심의 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⑥위원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회 위원이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개정 전의 임기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②제16조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한 차례 연임을 포함한 임기를 말한다)되어 교체 대상이 되는 위원의 수가 전체 민간측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교체되는 위원의 수를 전체 민간측 위원 수의 3분의 1로 조정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협의회 구성) ① (생략)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정부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되며, 민간측 위원장은 협의회에 참여하는 민 간측 위원들이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u>국토정책관</u> ----- ----- ----- -----.
③협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자로 한다.	③-----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민간측 위원	2.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u>시민·환경단체에서 추천</u> <u>하는 관련 전문가</u>	나. <u>도시계획 및 환경분야</u>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민간단체의 범위 등) ① (생략)	제11조(민간단체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민간측 위원의 선정은 <u>공모</u> <u>등 협의회에서 정하는 선정절차</u> <u>를 통해 공동위원장이 추천하면</u> <u>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u> 다 만, 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하 는 때에는 간사기관이 제4조제3 항제1호의 정부측위원과 협의	②----- <u>공모</u> <u>및 평가를 통해 별도의 추천위</u> <u>원회에서</u> ----- -----. ----- ----- -----

하여 정하는 선정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회의) ① (생 략)

②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생 략)
2.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의 합
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으며,
개회의는 정기회의와 같다.

③ (생 략)

제13조(의사결정방법) ① (생 략)

② 삭 제

<신 설>

<신 설>

----.

③민간위원 공모, 평가 및 추천
절차와 추천위원회의 구성·운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
칙에서 정한다.

제12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 운영세칙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공동위원장의
합의에 의해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의사결정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③회의는 협의회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
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
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 위원은 동일한 회
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정부측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

	<u>지 못할 때에는 하위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u>
제1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1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민간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연임</u> 할 수 있다.	② ----- ----- <u>한 차례 연임</u> --.
제17조(위원의 의무) ① ~ ③ (생략)	제17조(위원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④ 협의회 위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u>
<u><신설></u>	<u>⑤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u>
	<u>1. 위원이 당해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u>
	<u>2. 위원이 당해심의 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u>
<u><신설></u>	<u>⑥ 위원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u>

<신 설>

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회 위
원이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